

(사업방법서 별지)

## 1. 보험종목의 명칭

구 분	보험종목의 명칭
주 계 약	무배당 알리안츠희망사랑보험
종속 특약	무배당 실손의료비보장특약(종합입원형/종합통원형)
	무배당 치료비보장특약
	무배당 희망사랑특약 I
	무배당 희망사랑특약 II

## 2.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 가입나이

- 0세 ~ 13세

※ 다만, 무배당 희망사랑특약 I 및 무배당 희망사랑특약 II: 20세 ~ 97세

## 3. 보험기간

- 3년만기

## 4. 보험료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

일시납

## 5. 보험가입금액

- 주계약 : 주계약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 1인당 1,000만원

- 무배당 실손의료비보장특약

종합입원형: 무배당 실손의료비보장특약 약관 제3조(담보종목 별 보상내용) (1)종

합입원 제1항에서 정한 입원의료비의 하나의 질병 또는 하나의 상해당 지급한도(5,000만원)

종합통원형: 무배당 실손의료비보장특약 약관 제3조(담보종목 별 보상내용) (2)종합통원 제1항에서 정한 통원의료비의 하나의 질병 또는 하나의 상해당 지급한도(30만원)

- 무배당 치료비보장특약: 특약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 1인당 1,000만원
- 무배당 희망사랑특약 I: 특약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 1인당 500만원
- 무배당 희망사랑특약 II: 특약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 1인당 250만원

## 6. 배당에 관한 사항

배당금이 없음

## 7. 기타

### 가.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

구 분	피보험자(보험대상자)
무배당 알리안츠희망사랑보험	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 제5호 다목에 의한 소액보험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
무배당 실손의료비보장특약 (종합입원형/종합통원형)	
무배당 치료비보장특약	
무배당 희망사랑특약 I	주계약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가족관계등록부상, 주민등록상 또는 기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직계존속 중 계약자가 지정한 자
무배당 희망사랑특약 II	

### 나. 계약자

- 계약자는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함

### 다. 보험수익자(보험금을 받는 자)

- 보험수익자(보험금을 받는 자)는 계약체결시 반드시 지정되어야 하며, 보험수익자(보험금을 받는 자)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 및 계약자

의 요청 및 동의를 있어야 함

#### 라. 보험료 납입의 주체

- 이 계약의 보험료는 소액보험사업의 특성상, 휴면예금관리재단이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#### 마.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에 관한 사항 (무배당 실손의료비보장특약에 한함)

- (1)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(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)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한다.
- (2) 회사는 (1)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,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특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(3) (1)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,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를(이하 “변경전 요율”이라 함)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를(이하 “변경후 요율”이라 함)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. 다만,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상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(4)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에게 (3)에 의해 보상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.

#### 바. 기타 실손의료비보장특약에 관한 사항(무배당 실손의료비보장특약에 한함)

##### (1) 다수보험에 관한 사항

##### (가) 다수보험에 대한 가입 안내

회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될 자가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, 그 결과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될 자가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.

(나) 다수보험의 처리

- ①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③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한다.
- ②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최고한도로 한다.
- ③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,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. 이 경우 입원, 외래,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.

$\begin{aligned} & \text{각 계약별 비례분담액} \\ & = \text{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} \\ & \quad \times \frac{\text{각 계약별 보상책임액}}{\text{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}} \end{aligned}$
---

- ④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다수보험의 경우 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.

(2) 보험계약청약서에 추가할 사항

이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청약서에 추가할 수 있다.

- (가) 현재 의료기관에 검사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 예약(단순 종합검진은 제외) 여부
- (나) 현재 다른 보험회사(우체국보험, 각종 공제 등 포함)에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에의 가입여부

(3) 기타

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관련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될 경우 이 특약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.

사. 특약 부가에 관한 사항

- 무배당 실손의료비보장특약은 주계약에 의무적으로 부가하여 판매한다. 다만,

무배당 실손의료비보장특약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무배당 치료비보장특약을 의무부가하여 판매한다.

- 무배당 희망사랑특약Ⅱ은 무배당 희망사랑특약Ⅰ에 의무적으로 부가하여 판매한다.

#### 아. 보험상품의 공시 등에 관한 사항

- 보험업감독규정 제7-45조(보험상품의 공시 등) 및 제7-46조(보험상품의 비교·공시 등)은 단체보험에 준하여 적용함
-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(청약서 부분), 보험약관에 대하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-45조(보험상품의 공시 등) 제2항 제3호의 보험증권(보험가입증서)을 드릴 때,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함. 다만, 계약자인 휴면예금관리재단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

자. 계약자가 원할 경우 또는 판매채널별로 상품명칭 앞에 이름을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(보험가입증서)에 기재할 수 있다.

#### 차. 기타 보험수리에 관한 사항

- 무배당 실손의료비보장특약의 경우 보험료 산출시 특약보험가입금액 기준으로 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처리한다.
- 무배당 희망사랑특약Ⅱ의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시 특약보험가입금액 250만원 기준으로 원단위에서 절사하여 처리한다.